

2024년 제 ____ 차(____ 월)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

근무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유급휴업

아래 표의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

처리기한: 10일(주말, 공휴일 제외)

접수번호			접수일		
사업주	개인 (대표이사)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법인	법인명	법인등록번호		
사업장	상호명		사업장관리번호		
	소재지				
	사무실 연락처 (전화)		(팩스)		
	담당자 정보 (성명)		(연락처)	(이메일)	
	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우선지원대상기업	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규모기업	
파견수급사업장	사용(도급) 사업장관리번호		사용(도급) 사업장 피보험자 수		

신청자격	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, 일용근로자, 해고·권고사직 예정자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인 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	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
	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직·휴업을 이행하였고,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	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

당월의 휴업내용	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(당월 말일 기준)	명	당월의 휴업 대상자 수	명
	당월 예정했던 총근로시간 (소정근로시간+ 반복 연장근로시간)	시간	당월 실제 총 근로시간	시간
	당월 총 휴업시간	시간	근로시간 단축률(휴업률)	%

지원금 신청내용	당월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한 휴업수당 총액	총 _____ 원	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	<input type="checkbox"/> 2/3 <input type="checkbox"/> 1/2
	지원금 신청액	총 _____ 원		
	지급계좌 정보	은행명	예금주명	
		계좌번호		

신청일자	년 월 일	대표자 성명 (신청인)	(서명 또는 인)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

필수제출서류	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, 임금 지급 증빙서류(급여 이체확인증), 출퇴근기록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주(법인은 대표자)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	

선람	담당	팀장	과장	소장	결재일자
					년 월 일
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세부 내용

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당월 휴업시간 (시간)	당월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한 휴업수당(원)	지원금 신청액(원)
1	홍길동(예시)	90XXXX-2XXXXXX	50	350,000	233,330

*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바랍니다

사업주 확인서

- 지원제외 사업주: 아래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)
 - 가. 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: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
 - 나. 신규채용금지 의무 위반: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
 - 다. 고용보험료 체납
 - 다. 계절적 휴업: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
 - 라. 과거 고용유지조치 후 6개월 이내 10% 이상 인위적 감원: 고용유지조치 예정일의 전날부터 이전 2년까지의 과거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,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
- 고용장려금 등 중복지원 제한: 우리 부 고용장려금이나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·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(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·제40조의2)
- 계획 이행을 미달: 사업주가 사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아 그 내용(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· 고용유지조치 기간 ·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한 금품)의 이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, 사업주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고, 100분의 50 이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계획을 이행한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)
-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휴업 예정일에 조업하였다면, 사업주는 그 대상자의 해당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유지지원금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
-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·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고 시도한 사업주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 및 그 금액의 2~5배에 달하는 금액의 추가 반환 및 최대 1년의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(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)
-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사업장이 휴업을 실시할 경우, 사업주는 휴업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,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% 이상 또는 이상이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109조)
- 개인정보 활용 관련: 신청인 본인은 이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,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그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수집·활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
-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

신청일자	년	월	일	대표자 성명 (신청인)	(서명 또는 인)
------	---	---	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(필수)

신청인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‘행정정보의 공동이용’을 활용하여 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’[사업주(법인은 대표자)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]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

신청인 성명 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

-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: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
-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신청인 성명,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
-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: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3년
-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

신청인 성명 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